

(사업방법서 별지)

**1. 보험종목의 명칭**

선지급서비스특약

**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**

**가. 보험기간**

이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(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)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한다.

**나. 보험료 납입기간**

해당사항 없음

**다. 피보험자 가입나이**

주계약에 준함

**라. 보험료 납입주기**

해당사항 없음

**3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**4. 배당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## 5. 보험료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6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7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8. 해지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에 관한 사항

가.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(효력회복)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취급한다.

나. 주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것으로 본다.

다. 이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로 한다.

## 9.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0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1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2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3. 부가대상 보험계약

이 특약은 보장성 계약으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
## 14. 사망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

### 가. 선지급조건

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로 한다.

### 나. 선지급 사망보험금액의 한도

주계약 사망보험금액(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)의 50%이내에서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1억원까지로 한다. 다만, 1,000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%이내로 할 수 있다.

#### 다. 선지급방법

선지급 사망보험금액에서 다음에 정한 (1) ~ (3) 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지급한다.

- (1)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명기간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
- (2)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명기간의 보험료
- (3)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

#### 라. 선지급후의 처리

선지급 한 사망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일에 감액처리하며, 감액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
마.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 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대해서도 “가” 내지 “라” 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### 15. 기타

기타사항은 주계약에 준함